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은평구청 안산옥 주무관을 은평구 주택비리 공범으로 신고한다

내용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의 2를 위반하고 은평구 이송시킨 사건에 대한 안산옥의 답변(자료1)에 의하면, 임상현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https://www.k-apt.go.kr/web/main/index.do>, 이하 "공동시스템")에 계약서 전문을 올렸으니, 별 문제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 처리했다. 안산옥의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관리법] 제28조의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공동시스템이 아니라 "은평 뉴타운 10단지-1의 홈페이지"를 의미한다. 안산옥은 그것도 몰랐던 거다.

2. 답변 받자마자 안산옥과 전화 통화하며 컴퓨터로 공동시스템에 확인해 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계약서 전문은 없었다. 그럼에도 안산옥은 임상현이 계약서 전문을 올렸다는 거짓말을 했다

3. 기막힌 것은, 적격 증빙서류(국토부가 한정 시킨 3가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열람/복사 요청에 대한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임상현 주장만 받아들이고는 적격 증빙서류 존재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4. 그에 힘받은 임상현은 계속해서 "사기/위법 계약서"를 게시하며(자료2) "증거조작" 중이다,

3.12일 게시판에 올라온 사기 계약서(자료3)에 따르면,

(1) 계약서는 작업 전에 작성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2.19일 작업 끝난 계약에 대하여 3.9일 작성하였고

(2) [근로 기준법] 제17조의 계약서 작성 기본인 임금(110만원, 자료4),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계약서 작성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3항 위반: 수의계약 이유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라고 기재(자료5), 수의계약을 엄격하게 한정시킨 별표2에는 그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법] 제90조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공모" 스스로 자백한 것.

5. 결론: 은평구청이 임상현의 배임을 방조하고 있는 것

안산옥은 [공동주택 관리법] 이해는커녕, 웹페이지 구분도 못하는 돌대가리인 주제에

임상현의 배임 여부를 알기쉽게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자료 확인도 하지 않은 직무유기 범죄 저질렀다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 임상현은 위 4에서 언급했듯이, 증거조작 중이니까

참조 자료

1. 안산옥의 답변
 2. 3.12일 올린 사기 계약서
 3. 3.12일 올린 도르래 교체 위법 계약서
 4. 2.20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도르래 교체 견적서의 임금
 5. 3.10일 공동시스템에 올려진 입주대표회의와의 공모 자백
- 자료5.jpg 자료3.jpg 자료1.pdf 자료2.jpg 자료4.jpg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3-0505531
접수일	2026-03-13 08:43:48
담당자(연락처)	유하진 (044-201-5053)
처리에정일	2026-03-2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